

일본의 남성가족돌봄노동자 증가의미와 탈젠더화 가능성*

오영란**
ohyr21@gntech.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분석틀 |
| 2. 이론적 고찰 | 4. 남성가족돌봄자 증가현황 |
| 2.1 돌봄과 젠더 | 5. 남성돌봄 증가의 탈젠더화 분석 |
| 2.2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6. 정리 및 결론을 대신하여 |

主題語: 노인돌봄(elderly care), 남성돌봄자(male caregiver), 탈젠더화(degenderization), 일본(japan), 가족돌봄(family care)

1. 서론

노인 돌봄에 있어 ‘남성돌봄자 100만 명의 시대’가 일본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이 2010년경이다. 남성이 중심 돌봄자로서 참여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처음 전국규모의 개호조사가 이루어졌던 1968년에 돌봄 제공자 유형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던 대상은 주로 며느리였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여 그 비율이 2007년에는 16.9%로 격감하였다(厚生労働省, 2008).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남편과 아들로, 아들은 11.3%, 남편은 11.8%로 증가하였고, 부부 돌봄에서는 남편이 30%이상, 부모 돌봄에서는 아들이 46%를 차지하여 남성배우자와 아들의 돌봄 경향으로 변화하였다(津止正敏, 2010). 이와 같은 경향을 두고 다수의 연구들은 남성돌봄자의 증가상황을 “4명중 1명이 남성돌봄자”(全國介護者支援協議會, 2013), “남성이 주요 돌봄자가 되는 것”(田中慶子, 2017), “남성돌봄자 100만 명 시대”(津止正敏, 2010)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실제 일본사회에서의 남성돌봄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눈앞의 현실임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남성 돌봄 노동에 대한 연구의 경향들도 최근으로 올수록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내 남성돌봄자의 증가가 실제적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쓰도메와 사이토(津止正敏 & 齊藤真緒)의 [男性介護者(남성노인돌봄자) 全國調査](2007)가 발표되면서부터인데, 해당 조사연구에서는 전국의 295명의 남성돌봄자를 대상으로 그 속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의 결과에서는 고령과 무직, 가족지원이 거의 없이 2인생활자가 대부분이며 가사를 함께 돌보고 사회적관계의 축소경향이 나타났으며 제도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돌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국조사를 계기로 남성돌봄자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이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 연구경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남성돌봄자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모리(森詩惠, 2008)는 남성가족개호자의 개호실태를 살펴보면서 남성 돌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나가사와 외(長澤久美子 외, 2008)는 배우자와 부모를 돌보고 있는 남성돌봄자가 돌봄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였다¹⁾. 또한 산구(三具淳子, 2017)는 특히 젊은 3,40대의 싱글 개호자(돌봄자)들을 대상으로 돌봄의 과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²⁾ 두 번째 연구경향은 남성 돌봄과 젠더관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 연구들이다. 사이토(齊藤真緒, 2009)는 남성개호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를 하였는데, 돌봄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양립, 가사와 돌봄의 기술적 어려움, 고립화 등의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또한 남성 돌봄을 젠더화(성별화)된 경험으로 전환하여 고찰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라이프코스과 경력이행, 그리고 남성 돌봄 라이프의 변용과정에서 남성성의 구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히라야마에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데(平山亮, 2017), 그는 남성돌봄자의 상황과 그들의 돌봄 형태를 유형화하면서 젠더 관점에서의 비대칭적 관계를 고찰하여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노인에 대한 남성의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단 일본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그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복지국가들에서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웅거슨(C.Ungerson)은 그녀의 저서 [policy is personal sex gender and informal care, 1987]에서 노인을 돌보는 남녀 돌봄자를 대상으로 하여 돌봄 과정에서의 성별과 젠더가

-
- 1) 해당연구에서는 범주화분석을 통하여 돌봄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사회규범에 대한 책임,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무리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봄을 하는 것을 터득, 사회자원에 의한 지원과 기분전환방식 등이 돌봄을 계속하게 하는 강화요인으로 분석하였다(長澤久美子 외, 2008).
 - 2) 구체적 내용으로는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일이 뒷전이 되는 등의 이유로 불안정 노동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경우와 무직임에도 돌봄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으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을 고찰하였다(三具淳子, 2017).

돌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돌봄 관계에서 신체기능의 쇠퇴에 의한 돌봄 필요가 성별차이로 인해 성별분리가 고착화되는가, 또한 그것이 돌봄의 곤란을 가져 오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가족 내에서 젠더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가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을 느끼며 여성들의 돌봄은 의무에 의한 영향을 받고 남성은 애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남성들이 대다수 배우자를 돌보고 있어 주로 결혼과 배우자의 애정에 대한 것이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이 고려되었다(平岡公一외 역, 1999). 1984년에 영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웅거슨의 연구는 남성 돌봄에 주요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성별젠더관계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그 차이를 구별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돌봄이 가족 내 도덕적 의무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구복지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에서도 남성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주로 남성 돌봄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젠더 관계 및 남성성의 변화 등으로 연결하여 탈젠더화 분석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하의 질문에 초점을 두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렇다면 왜 지금의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돌봄 영역에서 전통적 성역할분리에 근거하여 사적영역에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가족 돌봄이 최근의 남성 돌봄 증가를 통해 남성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가부장적 가족중심인 ‘이에(家)’체제아래 남성소독자가장을 중심으로 공고한 가족질서가 강조되어오던 일본 사회에서 최근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가족 돌봄이라는 사적영역에서의 젠더질서의 변화인가.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일본에서 나타나는 남성돌봄자의 증가실태와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남성 돌봄의 증가현상이 성별분리를 넘어서는 탈젠더화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인가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체 3가지 맥락의 내용적 전개가 이어진다. 첫째는 본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돌봄과 젠더에 관련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왜 돌봄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성화 되었나를 시작으로 돌봄의 여성화·사회화·탈가족화·탈젠더화의 흐름으로 전개되어온 논의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실제 남성돌봄자의 증가는 어떠한가를 고찰한다. 돌봄의 제도화이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성돌봄자의 현실적 증가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차원적 현황을 통해 살펴본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남성돌봄자의 증가현상은 이후 돌봄의 탈젠더화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석한다. 이는 돌봄과 젠더에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틀을 도구로 하여 이루어진다.

2. 이론적 고찰

2.1 돌봄과 젠더: 돌봄은 어떻게 여성화되었나?

돌봄 문제는, 오랫동안의 성불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전개되고 그로 인해 성평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조금씩 진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가족 내 돌봄이 여성의 몫이었고 사회에서의 돌봄 관련 유급무급의 노동 또한 대부분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온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페미니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성 돌봄이 여전히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인식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헨런(N. Hanlon, 2009)은 돌봄이 여성화되는 배경을 사회 속에서 기대하는 남성성에서 찾았다. 즉, 사회 속에서 남성성은 위계적, 경쟁적 그리고 경제적 성공을 핵심으로 인식하고 가족 돌봄을 남성의 생계부양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사회 속 남성성의 의미가 공적인정이나 물질적 재산과 관련지어 인식되면서, 남성의 가족 생계부양은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돌봄의 수행 방식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안전한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과 가부장의 지위로 이어지는 남성 돌봄의 체면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순원 역, 2016: 275-280).

유사한 맥락에서 아마토(大和礼子, 2008)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발전에 따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은 공적연금의 성숙과 함께 연금제도에 의한 부양으로 전환된 것에 비해, 돌봄은 제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아내, 자녀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경제적부양은 연금가입자 남성에 의해 부양되면서 남성은 생계지원자로서의 역할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은 생애 돌봄자(life-long carer)로서의 역할로 위치 지워지게 된다. 여기서도 여전히 남성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가계생계부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사회에서의 남성들의 돌봄이 여성과는 다른 성별화된 과정으로 대체되어 왔던 것을 분석한 트론토(Tronto, 2013)는, 국가와 가정의 가부장적 성격의 연속성에서 남성들은 공적 공간에서 안전과 치안의 보호와 시장노동자로서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왔으며, 특히 치안으로 대변되는 보호는 남성의 공적 삶에의 참여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 경제조직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장노동자의 생산성은 가족의 생계부양에 기여하여왔다. 이러한 성별성에 기초한 역할기대는 남성의 가족돌봄이라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일조되었다고 보았다(김희강 외

역, 2014:152-171).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정책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여성과 가족의 역할들을 살펴본 에스핑앤더슨(Esping Anderson, 2009)은 남성과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비대칭적이라는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복지국가의 변화를 “불완전한 혁명(incomplete revolution)”으로 보고, 여기에는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부분과 이를 위해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여성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Esping Anderson, 2009:99-104). 즉,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이라 인식되어온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일과 가정양립의 주축이 되고 있는 반면, 남성은 돌봄 등 가족 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불평등은 여전히며 특히 노인돌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돌봄에서의 남성의 외면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역할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오랜 가부장적 가족역사에서 남성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가족의 생계부양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남성성이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밖의 생산영역에서 경제 활동으로 그 지위를 보전 받는 것이 기대되었다. 이에, 돌봄은 사적인 것이며 노력이 들지 않는,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것으로서 항상 여성의 자연스러운 직분 같은 것(안숙영, 2017)으로 인식되어왔다. 돌봄은 생산성과는 무관한 사랑의 행위이며 이타적 행위로, 이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이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적합한 책임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그것이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였다. 시민들 의식 속에서 남녀의 성역할분리에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돌봄이 사랑에 의한 역할이라는 인식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돌봄은 성 평등 인식과는 또 다른, 젠더불평등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돌봄은 사적재화로서 정서적 행위이며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부정적 재화(홍찬숙, 2017:320)로 형성되어온 것이다. 이는 폴브레(N. Folbre, 2001)가 지적한 대로 사회적 활동이 동반될 때 가족 내 무급 돌봄과 사회에서의 유급노동을 함께 책임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돌봄의 불이익’(윤자영 역, 2007:54-57)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2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의 편향된 성별분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적 저항들을 등장시켰다. 이는 남성의 임금노동과 여성의 가족노동이라는 전통적 성역할분리에 대한 개선

의 요구들이 이어져오면서 돌봄 노동에도 주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비판은 복지국가연구과정에서 볼 수 있다. 이른바, 주류 복지국가연구의 중심이었던 에스핑앤더슨(Esping Anderson, 1990)의 탈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사회정책학자들의 비판에서부터 전개되었다. 즉 탈상품화는 시장노동에 대한 의존 없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유지가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소득중단의 위기에 처할 때 복지국가에서 권리로 제공되는 사회보장 및 관련서비스에 의해 개인, 가족은 기초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시장노동 참여과정에서부터 누락되어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급여나 보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이 과정에서 누락되며, 오히려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상품화를 통해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탈상품화는 여성의 가족 내 무급노동을 시야에 넣지 않은 점과 이는 결국 종래의 복지국가연구가 젠더불평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들이 이어졌다. 여성의 시장노동이 가능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무상의 가족노동이 존재하고 복지국가는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이 대두되면서 여성의 무급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해 주목하는 논의가 이어졌다(Orloff, 1993; Siaroff, 1994; Sainsbarry, 1996; 1999).

탈가족화(defamilization)는 남성시장노동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에서 리스터(Lister, 1994)에 의해 시작되었다. 리스터는 탈가족화를 개인의 결혼 및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정의하고 여성에게 돌봄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공을 강조하였다(이진숙외, 2015; 김희찬, 2018). 한편, 이와 같은 논의들 속에서 에스핑앤더슨 또한 탈가족화 개념을 통하여 가족돌봄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시장의 급여제공에 의해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며(Esping Anderson, 1999),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유사한 시기에 계속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과 유상고용노동에 대한 분석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사일과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배우자의 소득의존 없이 자율적 가족형성유지능력에 대해 인식해야함을 제기한 연구(Orloff, 1993)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탈상품화에서 비롯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제안들은 젠더 관점에서 새로운 분석들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의 가족 내 노동에 대한 주의환기와 함께 성별분리 없는 보편적 돌봄으로 전환되도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과 정책개선이라 할 수 있다.

탈가족화와 함께 성 통합적 지향을 담은 탈젠더화(degenderization)는 성별분업의 완화를 의미한다. 특히 돌봄영역에서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남성의 돌봄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인즈베리(Sainsbarry, 1999)는 [개인소득자:돌봄제공자모델]을 유형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자와 돌봄 제공자로서 가능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급여제공을 보편적으로 하면서 돌봄에 대한 분담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탈가족화와 탈젠더화를 강조하는 다양한 페미니스트사회정책연구들은 젠더 통합적 돌봄 노동의 재구축을 요구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정책적으로 형성되어 제도적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흐름을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탈가족화 및 탈젠더화가 어떻게 진전 되는가로 옮겨서 살펴보자. 실제 돌봄의 사회화는 장기요양 등의 정책전개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화에 편중되는 경향은 여전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탈젠더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크니진과 크레이머(Knijin & kramer, 1997)는 돌봄의 탈젠더화 의미는 돌봄 제공에서 남성이 참여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방식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 가치를 재평가하는 전략으로 직접적 서비스제공이나 현금급여를 통한 현금보상의 방식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Knijin & kramer, 1997; 김수정, 2006 재인용). 이상의 논의에서 중점은 돌봄에서의 탈젠더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여성 및 가족의 돌봄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탈젠더화를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해당사회에서 탈젠더화가 적극적으로 지향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맥락이다. 김수정(2006)은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탈젠더화를 분석하면서 탈젠더화는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입으로 보고 성별분업의 통합화를 위한 스웨덴의 대표정책인 아버지휴가제를 분석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이어 일본의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개입되는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탈젠더화의 방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한편,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연구에서 탈상품화, 탈가족화의 논의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北明美, 1997; 深澤和子, 2003), 돌봄의 사회화에 대하여도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다. 특히 사사타니(笹谷春美, 2005)는 돌봄의 사회화를 2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노동을 가족 외의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족 돌봄자의 무상노동을 유급화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가족의 돌봄 노동 부담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이전하여 가족부담을 완화하는 탈가족화로, 후자는 1990년대 초 서구복지 국가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현금급여를 통한 비용의 사회화이다(笹谷春美, 2005).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는 여성들이 또 다른 형태로 돌봄 노동을 부담하게 되어 성별분리의 고착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게 된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생성과 변화들은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것이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의 제정(1997)과 시행(2000)이며 그 전에는 보육영역에서 돌봄이 사용되어져왔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노인돌봄과정에서 사회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庄司洋子, 2013:11). 돌봄의 사회화는 일본의 근대가족의 자조원칙이었던 가족 돌봄이 그 한계성을 보이면서 등장한 것으로 돌봄의 탈가족화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되어야 할 것은, 돌봄의 사회화가 상당부분 탈젠더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단지 가족부담완화나 탈시설화만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면 사회화는 가족외부의 또 다른 여성저임금 돌봄 노동자로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하며, 이는 돌봄이 오히려 기본적으로 가족과 여성의 책임임을 재확인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庄司洋子, 2013:14-15). 마찬가지로 노인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개호보험제도의 정책적 설계는 전통적 돌봄 모델인 “사적인 영역과 가족담당 등이 강조되는 것”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탈가족화의 논의가 실제 제도에서 명확하게 실행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예를 들면, 笹谷春美, 2005; 齊藤真緒, 2010). 실제로 일본의 개호보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에서 제도 전개는 재가노인돌봄에서 가족과 제도적 서비스의 책임분담을 묻는 형태로 변화하여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돌봄의 재가족화’로 지적하기도 하였다(藤崎宏子, 2009).

3.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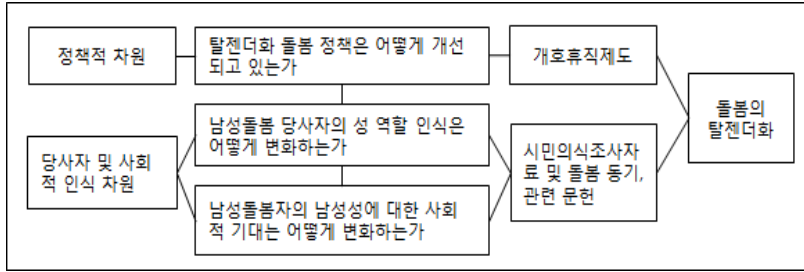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된 돌봄과 젠더와 관련된 여성화, 사회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노인돌봄에서의 남성돌봄자 증가현상은 탈젠더화로 이전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관점의 분석틀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립되었는데, 첫째는 그동안 탈가족화와 탈젠더화를 통하여 비교복지국가에서 논의되어왔던, 성별통합을 위한 정책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의 측면과, 둘째, 돌봄이 어떻게 여성화되었는가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남성성에 대한 특성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성별분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하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탈젠더화를 위한 돌봄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둘째, 당사자 인식 차원에서 남성돌봄 당사자의 성역할인식은 변화하고 있는가,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이다.

첫째, 탈젠더화를 위한 돌봄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탈젠더화가

적극적으로 추동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의 탈젠더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주가치의 변화에는 해당국가의 관련 정책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도로 실행되는가에 따라 견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돌봄의 탈젠더화가 어떻게 개입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성별분업을 완화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노인돌봄영역에 개입되는 직접적인 제도정책은 개호휴직제도이며 이는 일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남녀공동참획(男女共同参画)영역과도 연결된다. 이에 개호휴직제도를 대상으로 실제적 내용과 이에 대한 사용 및 접근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이것이 탈젠더화의 변화를 위한 개입으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남성돌봄 당사자의 성역할인식은 변화하고 있는가는 당사자 의식차원에서의 변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한다. 당사자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은 곧 적극적 행위로 이어지며 또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왔던 돌봄 영역에 남성이 주요 돌봄자로 참여하고 있는 배경이 남성 당사자의 성역할인식의 전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의식조사 등을 대상으로 일본사회의 기본적 성역할의식을 살펴보면서 돌봄의 동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남성돌봄자의 돌봄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남성돌봄자의 돌봄에 참여하는 계기와 동기가 무엇인가에서 스스로 체감하는 성역할변화의 의식이 있는지, 또는 어떤 선택 동기들이 돌봄자가 되게 하는가를 살펴본다. 남성당사자들의 스스로의 성역할관련 인식이 어떠한가는 장기적으로 돌봄의 성별통합의 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셋째,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어떠한가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남성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돌봄을 하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전술하였지만, 남성성은 그 사회에서 ‘남성은 이러해야한다’는 지표와 기준을 토대로 지향되고 그에 따라 주류의 상(像)이 만들어지는 점을 생각할 때 돌봄을 하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탈젠더화의 이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 일본내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헌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돌봄의 탈젠더화 가능성을 위한 분석틀

4. 남성 가족돌봄자 증가 현황

4.1 남성돌봄자 증가실태

일본에서의 남성돌봄자의 증가는 모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10여년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개호의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주요 돌봄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5.6%, 2001년 21.8%, 2004년 25.4%, 2007년 28.1%, 2010년 31.3%, 2013년 34.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厚生労働省, 2017).

<표1> 주요돌봄자의 성별 가족관계별 거주별 특성

(단위:%)

구분/년도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동거가족	동거전체	86.5	86.6	71.1	66.1	60.0	64.1	61.6	58.7
	배우자	28.3	29.9	25.9	24.7	25.0	25.7	26.2	25.2
	아들	17.8	20.4	19.9	18.8	17.9	20.9	21.8	21.8
	아들배우자	29.5	28.9	22.5	20.3	14.3	15.2	11.2	9.7
	남성	16.0	15.6	23.6	25.1	28.1	30.6	31.3	34.0
	여성	84.0	84.4	76.4	74.9	71.9	69.4	68.7	66.0
별거가족		13.5	13.4	7.5	8.7	10.7	9.8	9.6	12.2
사업자서비스		-	-	9.3	13.6	12.0	13.3	14.8	13.0
서비스시간(종일)		-	-	27.4	21.6	22.3	22.8	25.2	22.1

<자료: 厚生労働省, 国民生活基礎調査, 각 년도에서 필자 재구성>

<표1>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동거가족의 감소변화이다. 전체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비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당시 86.5%에 달하던 동거비율이 2004년에는 66.1%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58.7%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동거가족 감소를 대신하여 별거가족 돌봄자 비율이 이전보다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2001년 개호보험제도 창설이후부터는 개호사업자를 통한 서비스선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가 일부 진전되고 있는 측면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여성 돌봄과 남성 돌봄의 증감변화이다. 위 <표1>에서 동거가족가운데 돌봄을 행하는 가족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돌봄자 비율이 1995년 16.0%에서 2004년 25.1%, 2016년 34.0%로 계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1970년대~1990년대 사이의 성별분포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즉, 1968년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와상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돌봄자 가족구성원의 성별분포는 며느리가 49%를 차지하였고, 1977년 노인개호실태조사에서는 여성이 전체 86.9%, 이 가운데 며느리 37.0%, 아내 24.7%, 딸 17.8%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의 재가치매노인개호 실태조사에서도 여성이 81.0%, 남성은 15.6%를 차지하였던 것(齊藤真緒, 2009)과 비교하여 볼 때 지금의 남성돌봄자의 증가는 과거증가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성별분포를 보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며느리의 경우이다. 1995년 29.5%로 배우자보다 돌봄 담당의 비율이 높았으나 서서히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급감하여 2016년에는 9.7%로 한자리비율에 이르고 있어 지난 20여 년간 며느리의 돌봄 비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아들의 비율은 21.8%로 증가하였다. 물론 여전히 여성의 돌봄 담당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남성의 돌봄 비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세 번째는 돌봄 시간에서의 성별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총무성(總務省)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평소 가족개호(돌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 분포를 볼 수 있다<표2>.

<표2> 평소 가족개호를 하고 있는 인원과 시간

(단위: 천명, 돌봄 시간: 시간, 분)

내용/년도		2001	2006	2011	2016
돌봄자	남	1,721	2,008(37.6)	2,675(39.2)	2,776(39.7)
	여	2,982	3,329(62.4)	4,154(60.8)	4,211(60.3)
돌봄 시간	남	0.28(2.19)	0.31(2.24)	0.25(2.17)	(2.32)
	여	1.02(2.39)	1.00(2.34)	0.49(2.20)	(2.28)

* 평소 가족개호를 하는 기준은 1년간 30일 이상 개호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돌봄자의 ()는 비율%을 말하며, 돌봄 시간의 ()는 행동자 평균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당일 돌봄 시간에 해당함

<자료: 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 각 년도에서 필자 재구성>

<표2>는 1년간 30일 이상의 가족 돌봄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남녀별로 구분하여 돌봄자와 돌봄 시간을 제시하고 있어 시간의 양적증가를 통해 남성 돌봄의 증가를 살펴볼 수 있다. 돌봄 시간의 변화를 보면, 남성돌봄자 시간이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비율이어서 성별의 양적 차이는 여전히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여성이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주목해볼 만한 것은 남성의 돌봄 시간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에는 조사당일의 시간이기는 하나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의 돌봄 시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적 남성의 돌봄이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남성돌봄자의 증가사실은 앞으로도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데, 전국개호자지원협의회(全國介護者支援協議會, 2013)가 향후 주요 돌봄자로서 남성돌봄자의 증가전망에 대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증가해갈 것이다 14.3%, 증가해갈 것 같다 41.2%,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 3.7%,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1.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증가할 것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대답은 55.5%를 보였고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대답은 5.2%에 머물러 남성 돌봄자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남성돌봄자의 장기적 증가세 전망은 일본사회의 돌봄 영역에서의 남성참가가 현상적으로는 계속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관심처럼 성분절적 젠더구조의 변화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국가적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4.2 남성 돌봄 증가의 배경: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일본에서의 가족은 ‘이에(家)’를 중심으로 전통가족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근대가족으로 구분되어 특성과 형태들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가족구조의 변화를 특징적인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3> 일본의 가족구조 변화추이

(단위:%)

가족형태/년도	1960	1975	1985	1995	2000	2005	2010	2015
단독가구	15.7	19.5	20.8	25.6	27.6	29.5	32.4	34.6
65세이상 단독	.	.	.	.	6.5	7.9	9.3	11.1
핵가족	.	.	.	58.5	58.3	57.7	56.4	55.9
부부가구	7.4	11.6	13.7	17.3	18.9	19.6	19.8	20.1
부부+자녀	47.2	49.5	47.2	34.2	31.9	29.8	27.9	26.9

<자료: 總務省, 國勢調査, 각 년도 자료에서 필자 구성>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1960년 15.7%였던 단독가구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일반세대의 34.6%로 두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3세대 등의 세대동거 비율이 이미 1990년대에 15.4%로 감소한 이후 가족구조는 핵가족으로 재편되고 이 가운데 특히 단독가구의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즉, 다른 가구원이 포함되지 않는 1인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이미 가족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위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구조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단독가구는 <표3>에서 보듯이 2000년 6.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1%를 차지하였다. 이를 세대수로 보면 479만1천세대로, 이전의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세대수증가율이 23.7%까지 상승한 것이었다. 또한 부부가구의 증가율을 보면 1960년의 7.4%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대에 17.3%, 2015년 현재는 20.1%를 차지할 만큼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율의 추이는 각 국세조사에 이루어진 5년 단위를 기준으로 세대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0-2005년은 9.1%, 2005-2010년은 6.4%의 증가율이었으며 증감의 반복은 있으나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가구의 과반수이상, 즉 2015년 현재 전체가구의 54.7%가 단독가구이거나 부부가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곧 돌봄이 필요해지는 경우 누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돌봄공백의 위기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동거가구와 미혼동거에 대한 변화 현황이다. <표4>를 통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구성의 비율을 보면, 2015년 현재, 33.8%로 2010년 35.7%, 2005년 37.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國勢調査, 2017).

<표4> 부모와의 동거가구 비율 추이

(단위:%)

내용/년도		2005		2010		2015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동거율	전체	37.9		35.7		33.8	
	성별	40.3	35.6	38.1	33.4	36.1	31.6
연령대별 미혼동거율	40-44세	58.1	59.3	57.6	58.4	60.8	60.6
	45-49세	53.6	53.0	53.6	53.3	56.3	55.7
	50-54세	42.3	42.7	46.5	45.8	49.7	49.2
	55-59세	28.7	30.6	32.3	33.3	38.4	38.4

<자료: 總務省, 國勢調査 각 년도에서 필자구성>

위 <표4>에서 보여주듯이 부모동거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가운데 남성의 동거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95년에 44.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40.6%로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성별차이는 2015년까지 계속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2010년 조사에서 30%대로 저하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40%대를 유지할 만큼 비중 있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동거율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혼인연령을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연령대 4구간을 중심으로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5년 2010년에는 여성보다 약간씩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최근의 2015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미혼동거율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특히 고 연령대인 55세-59세 연령구간의 남성은 2005년 28.7%에서 2015년 38.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미혼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돌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구조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

3) 이외에도 미혼율의 증가는 단독세대의 증가배경과도 관련된다. 성별 미혼 비율을 보면 1955년부터 2000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가운데 남성은 2000년 31.8%, 여성은 23.7%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미혼율 증가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토에 의하면 1955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40여 년간 15-24세 연령층은 변함이 없으나 25-29세 41.0%에서 69.3%로 약 28.3포인트 상승, 35-39세는 3.1%에서 25.7%로 22.6포인트 상승하였다(佐藤和彦, 2005). 이는 초혼연령증가를 통한 만혼화, 그리고 결혼율 자체의 감소 등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가족적 구조변화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증가하고 동거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가족 동거는 증가하고 있어 역전의 형태를 보였다. 특히 남성의 미혼 동거비율, 그중에서도 고 연령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족구조가 두드러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남성돌봄자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카스가이(春日井典子, 2013)는 전국 국민건강보험진료시설협의회(2012)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남성돌봄자의 특징적 요소에는 미혼 또는 이별사별 등의 독신과 돌봄 후 퇴직하는 비고용상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 또한 오치아이(落合恵美子, 2004)는 노인 돌봄에 있어 지금까지의 돌봄 관행, 즉 성역할분리에 의해 형성되어진 장남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노인 돌봄을 전담해왔던 관행은 저출산 등의 인구가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인의 아들 딸 등의 친자녀에 의한 돌봄 구조로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것이다. 이에 사이토(齊藤真緒, 2010)도 같은 맥락에서 남성돌봄자의 증가배경이 인구 및 세대구조의 변화와 연동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세대가운데 단독세대는 13.1%에서 22.5%로, 부부세대 18.2%에서 29.8%, 미혼자녀동거세대는 11.1%에서 17.8%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세대구조 변화는 가족 내 돌봄이 부부 또는 친자녀 돌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齊藤真緒, 2010:12).

이와 같이 볼 때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는 남성돌봄자의 현실적 상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경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히라야마(平山亮, 2017)는 남성돌봄자의 50.0% 이상이 기혼자인 부분과 고용상황에 있어서도 남성돌봄자의 돌봄 전 고용상태가 정규사원 정직원이 42.9%, 무직 14.7%, 비정규직 파트타임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무직의 독신남성이 돌봄자인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였다(平山亮, 2017:32). 따라서 남성 돌봄의 증가배경은 단선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과 그럼에도 인구 가족적 차원은 구조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또한 남성돌봄자의 증가, 즉, 남성들이 어떻게 돌봄자가 되었나하는 배경을 탐색하는 것은 본 연구 후반부에서 검토하는 탈젠더화를 위한 남성들의 다양한 동기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 전국 국민건강보험진료시설협의회(2012)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미혼 독신남성의 증가, 그리고 비정규직고용이나 무직남성의 증가를 들고 있다. 즉, 자녀세대 돌봄자의 결혼여부에서 남성의 경우 기혼 50.0%, 이별 또는 사별의 경우가 15.7%, 미혼 28.3%으로 나타나 미혼과 이별, 사별 등의 독신인 경우가 절반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또한, 남성돌봄자의 고용상황은 돌봄 전 정규직근무였던 것에서 돌봄 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무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남성돌봄자가 비고용과 독신의 상태에서 돌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春日井典子, 2013:171-172).

5. 남성돌봄 증가의 탈젠더화 분석

5.1 탈젠더화를 위한 정책은 개선되고 있는가

남성돌봄자 증가현상을 통해 탈젠더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개입은 남녀공동참획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가정 양립지원’이며 이는 노인돌봄영역에서 개호휴직제도와 직결된다. 개호휴직제도는 1995년 [육아휴직, 개호휴직 등 육아와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개호휴직법)로 제정되어 중소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개호휴직은 노동자가 요 개호(돌봄이 필요한)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휴가 등으로서(동법 제2조2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법제정 당시 가족 돌봄으로 인해 퇴직하는 비율이 1992년 약 8만여 명에 달하면서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이 배경이 되었다. 이후, 해당 제도는 2004년 휴직사용노동자기준을 기간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휴직사용회수를 복수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는 단기개호휴가제를 신설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변화를 거듭해왔다. 최근 개호휴직법은 2015년 아베정권의 [개호퇴직제로(介護退職0)]의 정책방향에 따라 2017년 제도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시간사용과 관련한 유연성을 도입한 것으로, 개호휴직을 종래 1회만 사용하던 것을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개호휴가(연5일)에 있어서도 1일 단위가 아닌 반나절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것 등, 휴직 및 휴가단위 사용에 유연성을 두었다. 이는 노인 돌봄 과정에서 시설 및 병원상당, 시설입소를 위한 탐색 등 돌봄에 필요한 기반구축 및 수시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소정의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무시간제도의 이용에 유연성을 두어 개호휴직일과는 별도로 사용가능하며 3년간 2회 이상 이용가능하게 하여 사용기간 및 방식을 확대하였다.⁵⁾ 세 번째는 돌봄을 행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소정의노동시간면제가 신설되고 유기(기간)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개호휴직급여가 인상되었다. ⁶⁾

이와 같은 개정된 개호휴직법은 정책적으로는 제도개정을 통하여 제도접근성을 높이고자

5) 소정(所定)노동시간의 단축 등의 선택조치의 내용 즉, 단시간근무, 탄력근무제, 출퇴근시간 변경제 개호 서비스비용조성제도는 그대로 변화가 없었다.

6) 여기에는 소정의 노동시간면제와 개호휴직급여가 포함되는데 소정의 노동시간 면제는 요개호대상자가 요 개호 상태부터 종료까지 대상가족이 청구가능한 제도이며 개호휴직 급여율은 임금의 40%에서 67%로 인상되었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仕事と家庭の両立支援フォーラム、2017).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다. 첫째, 법적용에 있어 미약한 측면이다. 개호휴직법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웃도는 적극적 규정들은 기업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권장이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법 내용의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는 개호휴직제도이다. 2015년 현재 개호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에서 55.1%로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에서는 19.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호휴가제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대기업에서는 50.8%, 중소기업은 15.7%를 보이고 있어(厚生労働省, 2016),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법 규정이 실제 실행되는 것에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러한 법 실행 수준은 제도개설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돌봄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도이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연결된다. 아래 <표6>은 가족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추이이다.

<표6> 개호를 위해 과거 1년간 전 직장을 퇴직한 사람의 추이

(단위:천 명)

	2002	2003	2004	2005	2007	2012	2017
전체	92.5	98.9	103.5	104.3	144.8	101.1	99.1
남성	14.7	16.0	20.4	19.1	25.6	19.9	24.0
여성	77.8	82.9	83.2	85.1	119.2	81.2	75.1

<자료: 総務省統計局, 就業構造基本調査, 2018.7/2007년 자료에서 필자 구성>

<표6>을 보면, 2017년 현재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으며, 성별분포에서는 전체로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여성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중되며 일과 양립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남성돌봄자들의 돌봄으로 인한 퇴직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02년 1만4천7백 명에 그치던 퇴직자가 2017년에는 24천명으로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돌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남성들에게도 일과 돌봄의 양립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 두 번째이다. 특히 남성의 퇴직이, 취업하면서 돌봄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50대 전후연령세대와 관리직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장 내 중핵의 업무에 몰입하여 일할 세대인 남성 관리직종에서의 퇴직자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곤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飯島恵理, 2014). 이와 같은 개호휴

직의 현실들은 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취지가 충실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정책목표를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휴직제도 외 이루어지는 지원제도에서이다. 현재 개호휴직 및 휴가 외에도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무선택 조치들이 규정되어있다. 그 내용은 단시간근무제, 플렉시브타임제(탄력근무제), 출퇴근시간변경제, 개호서비스비용조성제도이다. 그러나 법적용의 원칙적 의무는 이러한 여러 의무선택 조치 가운데 무엇이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실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법제도의 적용 및 실행을 축소시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활용하여 대부분 단시간근무제도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노동조합연합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하고 연합에서 권장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들을 배포하여 노동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그 외의 다른 선택적 조치들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응으로 내놓고 있다(日本労働組總連合會, 2016). 통계적으로도 기업에서 설치하고 있는 선택적 조치 가운데 단시간근무제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2017년 61.6%(30인 이상 규모기업)가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 플렉시브타임제(탄력근무제)는 15.7%에 그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7).

<표7> 개호를 위한 소정노동시간단축 등 선택조치의 각 제도 이용내용(2017)

(단위%)

	제도이용자 총계	단시간 근무	플렉시브타임제 (탄력근무제)	업무시간 변경제	개호비용 원조	재택 근무	소정의 노동시간면제
여성	100.0	38.3	7.3	16.9	14.2	8.7	14.6
남성	100.0	18.4	4.5	7.5	33.2	32.3	4.0

<자료:厚生労働省、雇用機会均等調査 2017>

<표7>은 개호휴직제도와 소정노동시간단축 등의 의무선택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성별 내용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돌봄을 양립하는 노동자들은 성별에 따라 이용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단시간근무제도가 38.3%로 가장 높고 업무시간변경(16.9%), 노동시간면제(14.6%)가 그 뒤를 이어, 주로 직접적 돌봄 행위를 위한 시간조절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개호서비스를 위한 비용원조가 33.2%로 가장 높고 재택근무도 32.3%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직접적 돌봄 행위보다는 재정적 원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아예 집에서 근무하면서

돌봄을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에서 개호휴직제도가 젠더격차를 완화하고 남녀모두 돌봄노동자로서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인 조치들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도의 내용과 적용대상에 대한 것이며 이의 충실한 보완이 요구되는 점이다. 먼저 제도내용은 현재 개호휴직기간은 통산 93일이며 이 기간 내 3회의 일수를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적어도 1년의 기간으로 하고 분할회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日本労働組總連合會, 2016.) 이는 돌봄노동자가 93일의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돌봄 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으로 돌봄 기반을 구축하였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돌봄 문제는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더 이상의 개호휴직은 불가능하므로 일과 돌봄 양립이 어렵게 되며 결국은 개호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노동자, 기업, 그리고 돌봄 대상자가 모두 해당된다.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일일고용자를 제외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기업자체가 사용대상자를 제한해두는 경우, 예를 들어 개호휴직사용을 위해서는 근속년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노동자는 대상 외로 하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74.2%(雇用均等基本調査, 2012)로 높은 비율이다. 최근의 법 개정에서 기간한정노동자(계약직)의 경우는 계약 잔여일의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조건해제를 위해 정책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의 개호휴직 및 노동시간조정을 위한 선택조치들의 도입비율이 플렉시브타임제(탄력근무제) 7.5%, 주단위단시간근무제 10.5%, 근로시간변경제 12.8%(雇用均等基本調査, 2017) 등으로 대부분 10%대를 유지하여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즉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자가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일과 돌봄의 양립여부가 강화되거나 축소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책대상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5.2 남성돌봄 당사자의 성역할인식은 변화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남성돌봄 당사자의 성역할인식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 즉 성역할인식태도와 돌봄 동기를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구획되어진 성별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변화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는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남녀공동참획조사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돌봄 동기

에서는 남성들은 어떻게 돌봄자가 되었는가의 경로를 탐색하는데, 이것은 남성돌봄자의 증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지금의 돌봄이 남성들 스스로의 성역할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행위들의 연속이라면 여성화되어있는 돌봄 영역에서 젠더격차의 완화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남성들은 어떻게 가족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의 동기를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심리적 동기, 배경, 인식 등의 과정을 통해 남성돌봄자 스스로의 성역할인식을 살펴보고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성분절적 젠더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일본가계경제연구소가 전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면서 살펴본다.

<표8> 남녀공동참획조사에서 나타난 성역할인식

구분/년도		2000		2007		2016	
내용		비율	가장높은 응답대상	비율	가장높은 응답대상	비율	응답 대상
성역할인식: [남성은 외부에서 일, 여성은 가정을 지킴]이라고 하는 사고에 대한 찬반 여부	찬성	25.0%	60, 70대남성/ 70대여성	44.8%(찬성 13.8%+약간 찬성31.0%)	60대 남성	40.6%(찬성 8.8%+약간 찬성31.7%)	70대 남성
	반대	48.3%	20대~50대 여성	52.1%(약간 반대28.7%반 대23.4%)	30~50대 여성	54.3%(약간 반대34.8%+ 반대19.5%)	40-60 대여성

<자료: 内閣府 男女共同参劃調査, 2000, 2007, 2016년 자료에서 필자 구성>

먼저,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성역할인식변화를 <표 8>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외부에서 일, 여성은 가정을 지킴’이라는 성역할분리인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2000년 25.0%에서 2007년 44.8%, 2016년 40.6%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2007, 2016년의 경우 찬성의 비율은 13.8%에서 8.8%로 감소하고 있으며 약간찬성은 유사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반대의 비율은 2000년 48.3%에서 2007년 52.1%, 2016년 54.3%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명확한 반대는 23.4%에서 19.5%로 감소하였고 약간반대의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면, 찬성, 즉 전통적 성별분리인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대부분 60대, 70대남성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응답대상은 주로 여성들이며 전반적인 연령층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중 2016년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착된 성역할분리의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일하면 개인이나 사회에 기여하여 좋다는 비율은 46.8%, 맞벌이가 수입이 높으므로 40.6%, 남녀평등에 반대되므로 3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내의 능력발휘와 개인사회기여를 이유로 말한 대상은 50-60대 남성이, 남녀평등에 반대되므로가 이유로 말한 대상은 20-30대 남성이 각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 조사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성별분리에 대한 인식은 점차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변화해오고 있어 장기적인 성분질의식은 변화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 동의는 주로 여성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남성들이 주로 전통적 성역할을 공고히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남성돌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배우자 돌봄자와 관련된다.

둘째, 현재 가족 내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 돌봄당사자의 돌봄자가 된 이유

(단위:%)

내용/성별	남성	여성
자신의 가족이므로	58.8	54.5
동거 또는 근거리에 살고 있어서	55.0	54.5
본인 외 다른 돌볼 사람이 없어서	45.8	52.7
자신이 희망해서	13.7	7.1
가장 신세를 많이 져서	13.0	7.1
가장 사이가 좋아서	2.3	9.8
시간여유가 있어서	7.6	13.4

<자료: 田中慶子, 2017을 토대로 필자 구성>

<표9>의 내용은 일본가계경제연구소(2017)에서 전국의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여기서 나타난 바를 토대로 돌봄의 동기를 분석해보면, 첫째, 돌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경로를 들 수 있다. 위 응답 중 남녀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된 규범적 의식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는 다른 조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經濟研究所)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고 있는 전국의 20-69세사이의 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호 의식조사(2011)에서 ‘부모 돌봄을 선택

할 때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자녀인 자신의 역할이다'가 46.4%로 나타났고 성별구분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자신의 역할로 생각한다' 48.9%로 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특히 의식면에서 남성이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높게 인식하여 남성은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으로서 부모 돌봄을 인식한다고 보았다(的陽康子, 2012). 또한 나가사와 외(長澤久美子 외, 2008)의 질적 조사에서도 남성돌봄자의 돌봄의 동기는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책무라는 규범적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외 다른 돌볼 사람이 없어서'의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에게 있어 노인 돌봄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의무'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가족 내에서 돌봄의 전담자가 되어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돌봄의 동기에서 거주 장소를 배경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부모와의 동거가 돌봄이 시작되는 경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동거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봄으로서 돌봄과의 관계성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가계경제 연구소의 조사에 나타난, '왜 동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은 '어린 시절부터 동거하여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어서'이며, 비율은 33.7%였다. 그 다음은 '부모가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서' 19.8%, '부모가 고령이 되어서'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田中慶子, 2017). 동거의 배경은 두 가지 경로인데 하나는 계속 동거하고 있었던 경우와 다른 하나는 부모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필요하게 된 상태에서 재동거 하게 되는 경우이다. 비율적으로는 계속적인 동거상태보다 재동거 하게 된 비율이 합쳐서 35.0% 수준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을 위한 재동거의 경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돌봄이 시작되는 것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부모 돌봄에 대한 자녀로서의 역할책임이 일정부분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돌봄의 동기를 부모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남성은 신세를 많이 져서가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사이가 좋아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은 주로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동기가 되는 반면, 남성은 신세를 진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부모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사하게, 나가사와 외(長澤久美子 외, 2008)의 연구에서도 아들 돌봄자들이 말하는 동기 중 두 번째로 주요한 대답이 부모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돌봄의 관계에서 남녀성별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⁷⁾ 특히,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소득부양자라는 전통적 남성성에 의해

가족 돌봄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허용되어온 배경에서 실제 자신이 직접 부모를 위한 돌봄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희망이 여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⁸⁾ 이는 웅거슨(Ungerson, 1987)이 지적인 성별에 따른 돌봄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부합되는데, 부부간의 배우자 돌봄에서 남성은 돌봄을 애정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은 의무의 언어로 의미지우고 있어 성별에 따라 돌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平岡公一 외 역, 1999).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 정리해보면 남성돌봄자의 돌봄 동기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추동되기보다는 자녀나 가족의 책임으로서의 규범적 의식과 돌봄 대상자에 대한 보은과 관계적 감정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해 사회적 기대는 어떠한가

가족 내 돌봄에서의 탈젠더화는 지금까지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전형적 성별분리를 넘어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즉, 여성화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그 과정은 한 사회가 형성해왔던 남성성에 대한 특정기준이나 기대들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새로운 성격의 구축이기도 하다. 지금의 증가하는 남성의 돌봄 참여는 그러한 맥락 속에 있으며, 특히 남성돌봄자에게 부여되는 남성성은 지금까지 일본사회가 굳혀왔던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전환되어야함을 요구받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성돌봄자들을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즉 돌봄자 남성들의 남성성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과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분절적 인식에서 전환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서 남성성은 변화할 수 있는가와 그에 따라 분절적 젠더 구조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성공적

7) 사쿠다(作田啓一, 1999)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선택기준을 설명하면서 유용성과 원칙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 공감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행위자와 타인과의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혈연이나 사랑의 원리 등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합리적 이성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성적 선택에 의한 설명들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합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선택의 동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공감기준이다. 부모 또는 배우자 돌봄에서 이러한 선택 동기가 가능하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돌봄 동기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감의 용이성 등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들의 ‘사이가 좋아서’의 동기는 부모의 늙음과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감적 행위이며 또한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케어행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감기준의 적용이 설명 가능할 수 있다(春日井典子, 2014: 82-86).

8) 니세이 기초연구소(ニッセイ基礎研究所)에서 2012년 5월 정규직 40세 이상의 남녀 7,419명을 대상으로 개호실태와 니즈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호(돌봄)부담감이 남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돌봄 장소의 경우 남성은 시설개호가 부담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도 경감되는 경향이지만 여성은 시설(요양시설)쪽이 일 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은 완화되지만 정신적 부담은 높다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돌봄으로 인한 가족관계악화정도가 시설개호 쪽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분석하였다(松浦民恵, 2013)

남성성이 돌봄 하는 남성성과 일치된다면 이는 지속유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 돌봄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는 사이토(齊藤眞緒, 2015)는 돌봄에 있어서의 젠더평등에 관한 새로운 쟁점은 돌봄과 젠더정체성과의 교착을 둘러싼 문제, 즉 남성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히라야마(平山亮, 2017) 또한 남성돌봄자의 돌봄 실천이 젠더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성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남성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남성돌봄자로서의 남성성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탐색하여 탈젠더화의 전망을 살펴본다. 탐색의 과정은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남성들 스스로가 가지는 젠더인식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남성들의 정체성혼란의 경험을 고찰한다. 이는 모두 남성돌봄자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투영 받고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남성돌봄자의 돌봄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돌봄이 남성성의 변화를 반영하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첫째, 남성돌봄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은 어떤 것인가이다. 히라야마(平山亮, 2017)는 남성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남성돌봄자에 대한 젠더 비대칭적 인식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아내로 하여금 부모를 돌보게 하는 남성’이 표준적 남성성으로 전제하여 ‘직장 없이 부모 돌봄에만 전념하는 남성’은 표준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직접 돌봄까지 행하는 남성돌봄자는 지금까지 가족 돌봄을 아내에게만 맡겨왔던 가부장적 남성에 비해 아내가 있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돌봄을 한다는 남성으로 평가되어 호의적이다. 히라야마는 이를 두고 일과 돌봄의 양립에 대한 비대칭적 젠더성으로 분석하였다. 여성은 여성의 일인 돌봄과 남성의 일인 노동의 양립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 돌봄을 하지 않을 경우 비난의 대상이지만, 남성은 남성의 일인 노동과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젠더 비대칭적 인식은 결국 성별 분리적 사회인식에 토대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여전히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돌봄과 유사한 내용인 아동돌봄에 대한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돌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해 그 응답이, 물론 돌봄에 대한 남녀구별이 없어야한다 또는 남자도 돌볼 수 있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더 어울린다(13.4%),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는다(4.8%), 남성은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다(2.6%), 주위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는다(2.1%) 등의 성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응답도 모두 총괄하면 전체 22.9%를 차지하였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응답도 24.7%에 해당되어(內閣府, 2014),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히라야마의 지적처럼 여전히 성별분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平山亮, 2017)

두 번째는 남성돌봄자의 정체성 혼란의 경험이다. 이는 다양한 남성돌봄자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마즈이(松井由香, 2014)는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은 양가적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현대 일본의 바람직한 남성성은 경제적 소득자로서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지금의 남성돌봄자들은 경제적 소득자로서의 남성성과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자로서의 남성성이라는 이중의 틈새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즉 무직의 남성돌봄자라는 정체성은 ‘제 역할을 다하는 한사람의 남성’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를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돌봄자는 두 개의 다른 남성성의 틈새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젠더규범을 내면화한 것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松井由香, 2014). 실제, 남성이 가사, 육아, 개호 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시민들의 높은 응답은 ‘남성자신 스스로의 저항감을 없애는 것’(57.0%)과 ‘여성들의 저항감을 없애는 것(30.9%)’(內閣府, 2016) 9) 이라는 응답결과는 사회적 남성성을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이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여전히 남성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젠더규범에 국한된 남성성이 기준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집단적 자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성돌봄자의 돌봄 과정에서 남성성은 어떠한 유형과 패턴으로 나타나는가이다. 사이토(齊藤眞緒)는 남성들의 돌봄 행위가 돌봄 책임을 받아들이므로서 전통적 남성다움(남성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돌봄을 통해 전통적 남성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齊藤眞緒, 2015:38). 이것은 남성돌봄자의 돌봄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기존의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확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웅거슨(Ungerson, 1987)은 성별에 따른 돌봄의 의미가 다른 것 같이 돌봄의 내용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여성은 돌봄에 관련되는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에 비해 남성은 스스로의 직업상 경험과 관련지어 특히 돌봄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平岡公一 외 역, 1999). 실제 남성 돌봄의 돌봄 형태에 대해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드러나는 유형은 ‘돌봄=특별한 일’, ‘관리적 돌봄의 관리자 유형’

9) 2016년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여성 활약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사로, 그 외 남성의 가사육아개호에 대한 직장상사나 주위의 이해를 높이는 것(57.0%), 사회 속에서 남성의 가사육아개호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47.9%), 남성참여를 위한 동료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25.7% 등의 결과가 있다(內閣府, 2016).

또는 ‘제2의 직장일’로 인식하는 형태(松井由香, 2014:70)로 [업무로서의 돌봄]이 주요 특징을 이룬다. 이는 결국 돌봄을 보다 완벽한 일처리의 일종으로 여기고 돌봄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서비스로 나타나면서 엄격한 생활관리, 강도 높은 재활프로그램 등, 합리성과 효율성만 우선시되어 대상자욕구에 대응보다는 자신의 업무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돌봄으로 되어버린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일본에서의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은 여전히 성공적 남성성을 전제하고 돌봄이 결코 이를 커버해주지 못한 가운데 남성돌봄자들은 소득자 가장으로서의 남성성도 아니며 돌봄자로서의 남성성도 아닌 혼란적 상황 속에 놓여있다. 더 정확히는 스스로의 내부에서 새로운 돌봄자로서의 남성성을 수용하기 어려운 심리적 저항에 놓여있는 것일지 모른다. 또한 이러한 젠더 분절적 정체성의 발현이 돌봄 과정에서 행위로 나타나면서 돌봄에서의 전통적인 사회적 남성성이 재현되는 형태가 남성 돌봄의 주요 특성으로 정형화 될 우려도 있다.

6. 정리 및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왔던 가족 돌봄 영역에서 새로운 돌봄자로서 남성이 등장하고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두 가지를 고찰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남성돌봄자 증가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남성돌봄자 증가현상은 공고히 유지되어왔던 돌봄에서의 성별분리를 완화는 탈젠더화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었다. 먼저 남성돌봄자의 증가현상은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와 부모동거비율 감소의 가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종전의 며느리 중심의 돌봄에서 아들딸의 친자녀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성돌봄자의 증가현상이 탈젠더화로 연결되어 돌봄에서의 성별역할분리가 완화된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탈젠더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측면에서는, 개호후직제도가 남녀의 직장과 노인 돌봄의 양립이라는 정책 취지 속에서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전개과정에서는 최소의 기준으로만 적용의무화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 즉, 돌봄과 일이 실질적으로 양립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무선택조치를 다양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 돌봄자가 소속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책의 적용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대상

의 보편적 적용이 미약한 점, 그리고 정책의 이용과정에서 대상적용에서의 제도도입 미비와 내용의 충실성이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정책개입의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남성돌봄자의 성역할인식은 어떠한가의 측면에서는, 돌봄의 시작 동기는 성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발현되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인 부모에 대한 규범적 책임의식과 부모동거의 계기, 그리고 부모에 대한 보은과 친밀성의 정도 등 관계적 감정의 의미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에서는 남성돌봄자의 돌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젠더 비대칭적 남성성은 여전히 성역할분리에 토대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남성돌봄자들이 사회적 기준의 소득자 부양자, 가장으로서의 남성성과 돌봄자로서의 남성성 사이에서 정체성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돌봄 과정에서 업무적 돌봄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해 남성 돌봄은 성별분리에 의한 젠더규범을 내면화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살펴보면 탈젠더화의 가능성을 정리해보면, 남성 돌봄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완화의 구조적 변화인 탈젠더화로의 이전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의 역할과 남성성의 교착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사이토는 남성이 돌봄을 담당한다는 것이 성역할을 역전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음을 전망한 바 있다(齋藤眞緒, 2009:180). 실제, 지금의 다수 연구들에서 남성 돌봄의 특성들로 분류되는 곤란과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히라야마의 지적처럼 성별분리구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平山亮, 2017:38)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계기로 남성 돌봄이 탈젠더화로 변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는 남성돌봄자의 곤란을 완화하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지원, 예를 들면 현재 일본에서의 다양한 남성돌봄자 지원조직들의 활동을 통해 고립된 남성돌봄자를 동료모임에 이끌어내어 상호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¹⁰⁾ 또한 돌봄은 남성성에 대한 성분질적 기대를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천들도 요구되는 등 다차원적 스펙트럼에서의 접근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즉, 적극적 정책변화를 통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에스핑앤더슨은 남성들의 아동 돌봄 참여의 적극성 여부는 이용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의 정비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돌봄의 젠더균형을 위해서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충실성을 강조한 바 있다(Esping Anderson, 2009:103).

10) 남성돌봄자 지원조직의 선두는 2009년 남성개호자와 지원자의 전국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오야지회(1994년 동경), 실버파크(2005년 나가노현), 치매노인과 가족회(2009년 교토), 스마일웨이(효고현) 등, 각 지역의 소규모클럽까지 다양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노인돌봄 참여를 통한 탈젠더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돌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과 정책적 서비스가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사회에서 돌봄 퇴직의 문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감소되는 것으로만 다루어지는 차원을 벗어나 성별구분 없는 보편적 돌봄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시적 정책방향으로 하는 것, 그래서 지원책의 충실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노정되고 있는 돌봄자의 곤란이나 사회적 인식변화가 미진한 문제들에도 동시에 개입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강순원 역(2016)『정동적 평등』Karthleen Lynch, John Baker and Maureen Lyons, Niall Hanlon eds. *Affective Equality: Love, Care, and Injustice*(2009), 경기: 한울아카데미
- 김수정(2006)「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가족과문화』18(4), pp.1-33
- 김희강, 나상원 역(2014)『돌봄민주주의』Joan C. Tronto.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2013), 서울:아포리아
- 김희찬(2018)「탈가족화 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사회복지정책』45(3), pp.151-178
- 안숙영(2017)「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참여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33(2), pp.107-136
- 윤지영(역)(2007)『보이지않는 가슴』Nancy Folbre. *The Invisible Heart*(2001).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이진숙·박진화(2015)「탈가족화 정책들의 역사적 변천과정」『공공사회연구』5(3), pp.192-228
- 홍찬숙(2017)「사회정의론에 대한 돌봄관점의 논증」『한국여성학』33(2), pp.317-327
- 上田照子・三宅真理・西山利政・田近亜蘭・荒井由美子(2009)「要介護高齢者の息子による虐待の要因と多発の背景」『厚生指標』56(6), pp.19-26
- 飯島絵理(2014)「超高齢化の地域課題と男性」『実践研究』4, pp.117-131
- 岡沢憲夫・宮本太郎(2001)『福祉資本主義の三つの世界:比較福祉国家の理論と動態』G.Esping-Anderso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 京都: ミネルウエ書房
- 落合恵美子(2004)『21世紀家族〜家族の戦後戦略体制の見かた越えかた』東京:有隣閣
- 北明美(1997)「ジェンダー平等:家族政策と労働政策の接点、岡沢憲夫, 宮本太郎編」『比較福祉国家論』京都:法律文化社
- 斉藤真緒(2009)「男性が介護をすること」『立命館産業社会論集』45(1), pp.171-188
- _____(2010)「介護者支援の論理とダイナミズム」『立命館産業社会論集』46(1), pp.155-171
- _____(2015)「家族介護とジェンダー平等をめぐる今日的課題」『日本労働研究雑誌』658号, pp.35-46
- 三具淳子(2017)「30代・40代のシングル介護者の現状」『季刊家計経済研究』113号, pp.40-50
- 田中慶子(2013)「在宅介護のお金と暮らしについての調査の概要」『季刊家計経済研究』98, pp.2-11
- _____(2017)「在宅介護のお金と暮らしについての調査2016について」『季刊家計経済研究』113, pp.5-19
- 全国男性介護者ネット(2010)『男性介護』介護の扉を開く資料集
- 津止正敏、斉藤真緒(2007)『男性介護者全国調査』
- 津止正敏(2010)「介護の社会化と家族介護者支援を考える」『介護保険10年目を考える福祉社会フォーラム報告書』, pp.129-157
- 的場康子(2012)「これからの家族介護を考える」『Life Design Report』, pp.4-15
- 長澤久美子・飯田澄美子(2008)「男性介護者の介護継続要因」『家族看護学研究』14(1), pp.58-67

- 松井由香(2014)「男性介護者の語りにみる男性ゆえの困難」『家族研究年報』39、pp.55-74
- 松浦民恵(2013)「働く人による介護の実態」『ジェロントロジージャーナル』12(019)、ニッセイ基礎研究所、pp.1-14
- 森 詩恵(2008)「男性家族介護者の介護実態とその課題」『大阪経大論集』58(7)、pp.101-112
- 深澤和子(2003)『福祉国家とジェンダーポリティックス』東京:東信堂
- 藤崎宏子(2009)「介護保険制度と介護の[社会化][再家族化]」『福祉社会学会』(6)、pp.41-57
- 大和礼子(2008)『生涯ケアラーの誕生』東京:学文社
- 岡公一・平岡佐智子(訳)(1999)『ジェンダーと家族介護』Clare Ungerson. Policy is Personal Sex Gender and Informal Care(1987)、東京:光生館
- 平山亮(2017)「息子介護にみるケア経験のジェンダー非対称性」『季刊家計経済研究』113、pp.30-39
- 笹谷春美(2005)「高齢者介護をめぐる家族の位置」『家族社会学研究』16、pp.36-46
- 庄司洋子(2013)『親密性の福祉社会学:ケアが織りなす関係』東京:東京大学出版会
- 春日井典子(2014)『介護ライフスタイルの社会学』京都:世界思想社
- 厚生労働省(1996;1999;2008;2011;2014;2017)、国民生活基礎調査
 _____(2012;2017)『雇用機会均等調査』
 _____(2007;2017)『高齢者虐待防止及び高齢者療護者に対する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に基礎した対応状況調査』
- 総務省統計局(2002;2007;2012;2017)『社会生活基本調査』
 _____(1997;2002;2007;2012;2017)『国勢調査』
 _____(2007;2018)『就業構造基本調査』
- 全国介護者支援協議会(2013)『男性介護者に対する支援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佐藤和彦(2005)『家族構造変化に伴う医療介護問題』(www.jri.or.jp/research/pdf/kazoku.)
- 内閣府(2000;2014;2016)『男女共同参画世論調査』
- 日本労働組合総連合(2016)『改正育児介護休業法に関する連合の取り組みについて』(2016.8.25.)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7)『仕事と家庭の両立支援フォーラム』
- G. Esping- Anderson(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UK:Polity Press
- Orloff, S, A(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pp.303-328
- Sainsbarry,D.(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Siaroff, A.(1994) Work, Welfare and Gender Equality: A New Typology.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1월 31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일본의 남성가족돌봄노동자 증가의미와 탈젠더화 가능성

오영란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왔던 가족돌봄영역에서 남성돌봄자가 새롭게 등장하고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남성돌봄자 증가의 실태와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 현상이 지금껏 공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돌봄에서의 성별분리를 완화하는 탈젠더화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의 내용은, 먼저 남성돌봄자 증가현상은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와 동거가구 감소 등의 가족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이전의 머느리에 의한 돌봄에서 아들, 딸의 친자녀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탈젠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젠더화 정책의 변화, 남성돌봄당사자의 성역할인식변화, 남성돌봄자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는 3가지 분석관점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탈젠더화 정책의 적용과 전개상의 한계, 남성돌봄자의 젠더화된 남성성의 유지와 정체성 혼란,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성분절적 역할기대로 남아있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의 남성돌봄자는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탈젠더화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성돌봄자가 젠더분절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별 구분없이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한 보편적 정책제도적 사회환경과 돌봄과정의 곤란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Meaning of Increase of Male Caregiver and the Possibility of Degenderization in Japan

Oh, Young-Ran

As male caregivers appeared in the family caring area,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recognized as the role of women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noting the phenomenon of increase in its ratio in recent years,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status of increase of male caregivers, and review if this phenomenon can be transferred to degenderization to mitigate the gender separation in caring, which has been concretely preserved so far.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first, as for the phenomenon of male caregiver increase, from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actual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literature, there are famil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family households and married households, and the decrease in living together households, etc., and the aspect is changing from caring by daughter-in-law in the former way to caring of biological children. Second, as for the matter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le caregivers leads to degenderization, which may change the gender role separation in caring, the change of degenderization policies was analyzed from the three viewpoints of the nursing care leave system, the change of the gender role consciousness of the male caregiver, the masculinity of the male caregiver and the social recognition, and As a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application limit of degenderization policy, maintenance of gendered masculinity of male caregiver and identity confusion, and social perception of masculinity still maintain gender segmental criteria. Therefore, despite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male caregivers, it is difficult for the phenomenon to be able to lead to the change of degenderiz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gender segmental structure of male caregivers in the future, various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support the difficulty of the caring process and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job and caring are not incompatible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